

2000년도 서울특별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 
세입·세출 추가경정예산(안)  
심사보고서

의안  
번호 759

2000년 12월 16일  
예산결산특별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0년 11월 24일  
서울특별시 장

나. 회부일자 : 2000.12.11

다. 상정일자 : 서울특별시의회 제19회 정례회  
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
(2000.12.12) 상정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기획예산실  
장 김우석)

가. 제안이유

-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서 지원되는 의료 보호 대상자 진료비에 대하여 국고보조금이 273억원 추가 교부되어
-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에 따른 시비부담금 273억원을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기 위함

나. 주요내용

- 추가경정예산(안)의 규모  
2000년도 서울특별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(안)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1,534억8천6백만원보다 272억8천5백만원 증가한 1,807억7천1백만원으로서 당초예산보다 17.8% 늘어난 규모임

◆ 추가경정예산(안)의 규모 ◆

(단위 : 백만원)

회 계 명	추가경정예산(안)	2000기정예산	증 감	비율(%)
의료보호기금	180,771	153,486	27,285	17.8

○ 세입예산(안)

-세입예산 내역은 사업외수입 및 보조금수입으로서 사업외수입은 기정예산 632억4천9백만원보다 272억8천5백만원 증가한 905억3천4백만원 규모로 일반회계 예비비에서

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로 전입되었으며  
-보조금은 기정예산 902억3천7백만원 외 변동이 없으며 아래와 같이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에 의거 국고에서 기교부 간주처리되었음.

◆ 세입예산의 규모 ◆

(단위 : 백만원)

과 목	추가경정예산(안)	2000기정예산	증 감	비율(%)
의료보호기금	180,771	153,486	27,285	17.8
사업외수입	90,534	63,249	27,285	
보조금및교부금	90,237	90,237	0	

◆ 간주처리 내역 ◆

(단위 : 백만원)

당초예산	제1차 간주처리 (2000. 10. 13)	제2차 간주처리 (2000. 11. 22)	기정예산 (2000. 11 현재)
126,200 (X62,951)	1,227 (X1,227)	26,059 (X26,059)	153,486 (X90,237)

○ 세출예산(안)

-세출예산 내역은 관리비와 사업비로서 관리비는 3억9천8백만원으로 변동이 없고 사

업비는 1,803억7천3백만원으로 기정예산 1,530억8천8백만원보다 272억8천5백만원 증가되었음

◆ 세출예산 증가규모 ◆

(단위 : 백만원)

과 목	추가경정예산(안)	2000기정예산	증 감	비율(%)
의료보호기금	180,771	153,486	27,285	17.8
관 리 비	398	398	0	
사 업 비	180,373	153,088	27,285	

3. 검토의견(전문위원 임령)

- ▶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로 지원하는 의료보호 진료비는 국고보조금(국·시비 각 50%)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당초 국고보조금 내시액 629억5천1백만원에 의거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에 의거 시비 포함 기정예산 1,262억원을 편성하였으나, 국고예산의 과소책정 및 '99년도 체불진료비 이월(\*별첨자료 참조) 등으로 사업예산이 절대 부족하여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추가로 지원된 의료보호기금 국비 272억8천5백만원에 대하여 서울시도 50%에 해당하는 시비부담금 272억8천5백만원을 추경 편성코자 함이며
- ▶ 금회 추경예산은 저소득 의료보호대상자들을 위하여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됨. 다만 어려운 경제난 등으로 인하여 의료보호대상자(4인가구기준, 월소득 93만원이하)가 늘어나고 또한 진료수가('99년대비 21.7% 인상) 및 연간 진료일수('99년 330일→2000년 365일)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매년 의료보호 비용부담액이 늘

어나고 있는 실정이나, 2000년도 의료보호기금은 '99년예산(153,100백만원)보다 3억8천6백만원 늘어난 1,534억8천6백만원으로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바,

- ▶ 이는 중앙정부의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비 지원의 인색에 기인한다고 판단되나, 서울시도 의료보호진료비를 국고보조사업으로만 인식하여 국비가 지원되어야 시비를 편성하는 등의 소극적인 시책으로만 일관함으로써 의료기관 및 약국 등에 의료보호진료비 체불액이 늘어나도 기금부족으로 상환을 제대로 하지 못한 관계로 진료를 받으려는 의료보호대상자들이 의료기관 등의 기피로 많은 피해를 받고 있는 실정임
- ▶ 따라서 향후 중앙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·건의하여 진료비지원금이 증액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아울러 저소득 의료복지 지원을 위한 자체 의료보호기금운용계획 등이 적극적으로 수립되어 의료보호대상자들이 적기에 의료보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

(최근 3년간 진료비 발생 및 체불현황)

(단위 : 백만원)

연도별	예산액	소요액(당해년도)	지급액	체불액	비 고
1998	97,292	126,246 (95,531)	96,795	29,451	○ '97. 체불액 30,715
1999	153,100	193,427 (163,976)	150,862	42,565	
2000	126,200	222,371 (179,806)	126,200	96,171	○ 12월까지의 발생예상액이 포함된 금액이며 ○ 추경예산이 확보되어 집행(546억원)될 경우에는 416억원의 체불이 예상됨

- 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- 5. 토론요지 : 생략
- 6.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: 해당없음

- 7. 수정안의 요지 : 해당없음
- 8. 심사결과 : 「원안가결」